

## 산재보험의 법률상담(4)

박 필 수 우리 협회 고문

**Q** 출판회사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인쇄물 점검작업중 갑자기 하반신 마비증세로 쓰러져 병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으로 진단된 경우(업무상)

**A** 뇌경색은 근로자가 생체리듬의 조화를 잃게 되는 하루 12시간의 과중한 주·야간근무를 바꾸어 일을 한 데다가 위 질병이 발병된 무렵은 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한 까닭에 작업장이 매우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위 발병 전날 혼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하였던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발병 당일에도 동료근로자가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다시 혼자서 작업을 함으로 인한 과로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져서 근로자의 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2.5.21, 91 구 113424).

**Q** 동료부친상 장지에 다녀오고 나서 계속 피로감과 두통·현기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어 뇌경색증이 발병·사망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근로자가 평소 고혈압증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장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해 오고 평소와 달리 12시간씩의 야간근무를 4일동안 계속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급격히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근무후 쉬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동료의 부친상에 장지까지 가서 문상하는 등의 무리가 겹쳐 결국 뇌경색증의 발병·사망에 이른 것이고, 회사내 같은 부서의 동료근로자들 사이에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참여한 그 간부로 활동하는 것이 회

사업무 자체라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 위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2.9.25, 92 누 11299).

**Q**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기능장애, 직접사인 심박동정지와 호흡정지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외국인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사망하기 전부터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문제, 특히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영업부진, 신제품개발의 지연, 사무실의 이전문제 등 경영난에 처하여 정신적인 압박감이 가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감이 뇌출혈을 유발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가사 위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위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보이는 고혈압증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2.11.6, 92 구 1661).

**Q** 상차작업반원인 근로자가 종전 업무상재해인 증상을 입고도 그 치료가 완결되기 전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업무상)

**A** 상차작업반원인 근로자가 상차작업중 수송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우측근골절상을 입고 요양중에 치료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픈 발을 무릅쓰고 정상적인 상차작업에 임하였고, 치료종결후에도 계속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상차하고 수송차량에 적재한 제품의 봉괴를 막기 위하여 고무줄로 조여매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으로서 타박상 등에 의한 내출혈에 의하여 그 혈전이나 색전이 생성되고, 또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혈전이나 색전의 형성을 촉진케 한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뇌경색은 종전의 업무상재해인 증상을 입고도 그 치료가 완결되기 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무거운 제품을 나르는 일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계속하였기 때문에 색전의 형성이 촉진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2.12.8, 92 누 9401).

**Q** 프레스기능공이 집에서 휴식중 말을 할 수 없다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서 정밀진찰결과 뇌경색증으로 판명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레스가능공인 근로자가 프레스작업중 심한 어지러움증과 두통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바가 있음에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하여 근무하였고 다시 그 다음날인 구정휴무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말을 할 수가 없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한방치료를 하여 오다가 6개월후에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허혈성뇌졸중)으로 판명된 경우, 위 근로자의 뇌경색증은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초과근로와 철야근로 등 업무의 과중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므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3.2.9, 92 누 16492).

**Q** 시멘트믹서공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작업 도중 쓰러져 뇌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인 근로자의 뇌경색증은 일주일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3.2.12, 92 누 16553).

**Q** 야간근무를 마친 택수운전기사가 사내탁구장에서 탁구를 친 후 휴식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택수운전기사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당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운전기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사내탁구장에서 탁구를 친 후 다른 팀과 교대하여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평소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당뇨병이 겹쳐 있었으며, 1주일 단위로 주야간교대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신체적 부조화로 인하여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교통량이 폭주하는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사고의 위험속에 과도한 정서적 부담을 받게 되는 고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그것이 유인이 되어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3. 2. 25, 92 구 7049).

**Q** 사내에서 중식후 동료근로자들과 족구운동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 오던 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급형설계원인 근로자가 점심식사후 회사 앞 공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족구를 하던 중에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근무에 임하였으

나 몸의 상태가 계속 좋지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길에 실신하여 병원으로 다시 후송하던 도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평소에 심비대 및 확장, 좌우관상동맥에 고도의 경화, 협착증이 있었던 데다가 업무의 성질상 금형설계도면의 작성업무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업무이어서 세심한 주의와 정신집중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는 업무이고, 사망 직전 매일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업무량의 폭주로 과로가 겹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평소의 지병을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3.3.12, 92 누 17471).

**Q** 몸이 불편하여 조퇴한 후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망인은 사망 이전부터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이라는 혈관질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생산주임 또는 생산계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틀에 한번씩 연장근무 또는 철야근무를 하는 등으로 업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가중되어 왔으며, 더욱이 사망 일주일전부터 두통과 피로를 느끼는 등 극도의 피로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로를 회복할 사이도 없이 자주 술을 마시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육

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존질환인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의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위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의 주된 발생 원인이 위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보여지는 음주와 흡연 또는 고혈압증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1993.6.8, 93 누 5116).

**Q** 사내에서 저녁식사 도중 세면장에서 쓰러져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자동차부품회사의 제품출하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평소에 심비대, 대동맥 판막협착 등으로 인한 협심증이 있었던 데다가 업무의 성질상 장부와 출하물량을 맞추어야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므로 업무상 정신적 긴장감에 쌓여 있었고, 거기다가 약 2년 반전부터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수면부족과 과로에 시달리게 되어 피로가 누적된 결과 그것이 유인이 되어 평소의 지병인 협심증에 가중하여 심부전상태가 초래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3.6.8, 92 누 16911).

**Q** 회사 회의실에서 간부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재해의 경우(업무상)

**A** 레코드제작회사의 공장장이 간부회의 도중 회사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장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사업부 신설에 따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부실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3.6.17, 92 구 28893).

**Q** 택시운전기사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택에서 수면중 여러 차례 토하고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후송 도중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택시운전업무는 그 업무 자체로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것인 데다가 최근 서울도심지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승객 1회 운송시간의 장시간화 승객 운송횟수의 격감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되어 수입급 미달 우려와 일정수준의 생계비 확보부담으로 정신적 중압감을 느끼는 가운데 곡예운전 등을 감행하여야 하는 근무환경속에서 망인은 택시운전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여온 데다가 사망전 3개월간 동료기사들에 비하여 1일 평균 주행거리면이나 1일 평균임금액면에서 더 많은

실적을 올렸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사망 직전 5일간 연속되어 온 야간근무로 생체리듬의 부조화가 급심한 속에서 사망 전날 평소보다 많은 주행거리에 11시간이나 무리하게 근무하느라고 정신적·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우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3.6.18, 92 구 27791).

**Q** 검사포장공이 사내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관중석에 응원을 하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알루미늄포일 제조회사의 검사포장공인 근로자는 사망 이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거나 심장계통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일은 없었으며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의 기존질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평소 검사 포장공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주문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업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가중되어 왔으며, 더욱이 재해일에는 날씨가 쌀쌀함에도 아침 일찍 안양공설운동장에 나가 사내체육대회 행사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술까지 마신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망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존질환인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의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의 주된 발생원인이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3.7.23, 92 구 34034).

**Q** 미싱공이 근무중 쓰러져 사체부검결과 심근경색증으로 밝혀진 사망재해의 경우(업무상)

**A** 봉제공장의 미싱공인 근로자는 16세의 어린 나이부터 열악한 작업환경의 회사 봉제공장에서 5년여간 계속 일을 하여 왔고 더구나 사망 무렵에는 회사작업을 마치고 야간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관계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데다가 작업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평소 주간근무시에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하였고 회사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일주일내내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특히 사망 전날도 휴일이었으나 수출물량이 밀려 근무를 하느라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계속하여 사망 당일 오후까지 근무하므로 인하여 그 과로가 더욱 더 가중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 못할 바 아니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 1993. 7.27, 93 누 10538).

**Q** 공장주재 이사가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직접사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공장주재 이사가 근무중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인근 사택으로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인근 병원

으로 후송·가료를 받던중 위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공장주재 이사로서 500여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생산독려·단체교섭 등 공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발병 2개월전부터는 매주 수·토요일 2회에 걸쳐 야간비상근무를 하여왔고 인력수급을 위해 여러 차례 타지역으로 출장이 인력모집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협심증 및 당뇨병의 기존질병을 앓고 있는 6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이 누적되었고, 심신의 피로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사유로 인한 재해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3.8.12, 93 구 7862).

**Q** 근무중 언어장애를 일으켜 자기치료를 하였으나 11개월후 언어장애가 재발하고 우측 반신마비의 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뇌경색증으로 판명된 경우(업무상)

**A** 회사의 신설된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수행에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근로자가 뇌경색증으로 언어장애 및 반신마비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비록 뇌경색증을 앓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문헌보고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뇌경색증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급속도로 뇌경색으로 발전·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므로, 근로자가 앓고 있는 뇌경색의 질병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3.9.2, 93 구 10936).

**Q** 경리담당이사가 업무대책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간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고 가료중 선행사인 간경변증, 중간선행사인 식도정맥류파열, 직접사인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망인은 간염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소에 회사의 자금담당, 경리출납, 자재구매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고, 최근에 회사의 경영사태 악화로 인한 비상대책회의, 자금준비 및 회사부도로 인한 사후수습 등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급격히 가중됨으로써 기존질환인 간염을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변증으로 발전되었고 또한 위 간경변증

이 과로로 급격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3.10.14, 93 구 16118).

**Q** 취사부원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등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내식당 취사부원인 근로자가 근무중 두통을 일으켰으나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에도 심한 두통과 구토가 발생하였으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고 위 질병으로 쓰러진 경우, 위 근로자는 성별과 나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장거리의 출·퇴근과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3주에 한번씩 철야근로를 반복하여 옴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3.9.28, 93 누 7440).